

1

실업급여

□ 실업급여

■ 사업내용

-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**구직급여**와 **취업촉진수당**으로 나누어져 있음.

● 실업급여의 종류

분		지 원 요 건 등
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90~240일간 퇴직전 평균임금의 50%를 지급(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및 지급 완료해야 함) * 지급수준: 1일 상한액 60,000원, 1일 하한액 최저임금의 90%(18년 시급 7,530원)
취업 촉진 수당	조기재취업수당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실업급여신청일로부터 7일이 경과한 후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기간을 1/2이상 남기고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(사업을 영위한) 경우 남은 일수의 1/2 지급
	직업능력개발수당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실업기간 중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 실제로 훈련을 받은 날 1일 5,800원(교통비,식대 등) 지원
	광역구직활동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로 거주지에서 50km 이상 떨어진 회사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구직활동을 한 날에 소요된 교통비 및 숙박료 지급
	이주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취업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기 위해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이주비 지급
연장 급여	훈련연장급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직업능력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훈련을 받도록 지시한 자로서 구직급여의 100%를 훈련을 받는 기간 지원(최대 2년)
	개별연장급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에게 구직급여의 70%를 60일간 연장하여 지급
	특별연장급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대량 실업사태 발생 등으로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발생 시 구직급여의 70%를 60일간 연장하여 지급
	상병급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실업신고일 이후 질병·부상·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 지급

- 재취업지원서비스 : 취업알선, 구인·구직 만남의날, 채용대행, 동행면접 등

■ 실업급여 신청방법

- 구직등록** : 실업급여는 수급자격자가 **구직의 의사와 능력이 있을시 지급되는 급여**로 본인이 직접 워크넷(www.work.go.kr)을 통해 신청
- 수급자격신청** :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신청교육* 이수후 신청
- * 수급자격신청교육은 고용센터 방문(약 2시간 소요) 또는 온라인을 통해서도 수강이 가능(www.ei.go.kr)

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(☎국번없이 1350), 고용보험(www.ei.go.kr), 워크넷(www.work.go.kr)

□ 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

■ 사업내용

- 구직자가 실직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극복하고, 심리적 안정을 되찾아 궁극적으로 취업가능성이 향상되어 빠른 재취업에 이를 수 있도록 지원
- 상담을 통한 스트레스 및 심리상태 측정, 개인별 문제 확인, 후속 심층상담 및 스트레스 관리와 관련된 집체교육을 실시하며, 고용센터에 상주하여 상담서비스 운영

□ 집단상담프로그램

■ 사업내용

- 개인의 특성에 따라 12명~15명의 소규모 그룹이 3일~5일간 함께 참여하여 취업의욕, 취업기술 및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

	대상	프로그램 내용
(5일)	구직자전체	•취업의욕증진, 취업정보수집, 지원서류 작성법, 면접실습 등
취업희망(4일)	취약계층 구직자	•자존감 회복을 위한 활동, 자신감 향상, 근로의욕 증진, 효과적 의사소통 등
성실(4일)	고령 구직자	•만 50세 이상 참가, 마음열기, 마음 모으기(협력), 의사소통 및 생애설계와 비전수립, 구직기술 등

□ 취업성공패키지

■ 취업성공패키지 I: 기초생활수급자, 차차상위(중위소득 60%)이하 저소득층, 기타 특정 취약계층*

* 노숙인, 결혼이민자, 북한이탈주민, 위기청소년, 청년 니트족, 신용회복지원자, 건설일용근로자, 여성가장 등

■ 취업성공패키지 II: 청년층(만18~34세), 중장년층(만35~69세, 중위소득 100% 이하 가구원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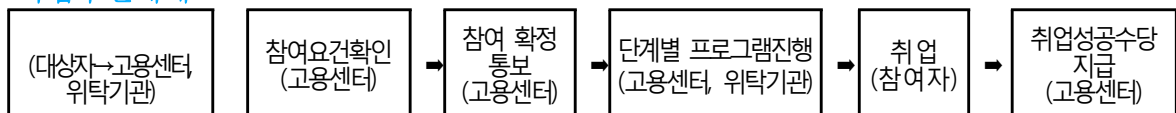
* (청년층) 대졸자, 고졸 비진학자, 고교 최종학년 재학생, 대학(원) 최종학기 재학생 등

* (중장년층) 실업급여 수급 종료자, 실업급여 수급요건 미충족자, 영세자영업자(1억5천만원) 등

< 단계별 지원내용 >

	1단계(상담·진단)	2단계(직업능력향상)	3단계(취업알선)
I	•3주~1개월 •참여수당 최대25만원	•최장 8개월 •훈련비 300만원(내일배움카드, 최대 10%) •참여수당 최대 28만4천원(6개월)	•최장 3개월 •취업성공 시 최대150만원지급 •청년 구직촉진수당 30만원 최대 3개월
패키지 II	•1주~1개월 •참여수당 최대20만원	•최장 8개월 •훈련비 200만원(내일배움카드, 자부담 5~50%) •참여수당 최대40만원(6개월)	•최장 3개월 •청년 구직촉진수당 30만원 최대 3개월

■ 사업추진체계



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(☎국번없이 1350), 워크넷(www.work.go.kr), 취업성공패키지(www.work.go.kr/pkg)

□ 내일배움카드(실업자)

■ 사업내용

- **지원과정** : 고용노동부로부터 적합성을 인정받아 훈련비 지원 대상으로 공고된 훈련과정
 - * 세부훈련정보는 직업훈련포털(hrd.go.kr)에서 직접 검색·확인 가능
- **지원대상** : 고용센터의 상담을 거쳐 훈련의 필요성이 인정된 실업자 등에게 취업희망분야에 따른 훈련 직종을 협의·선정 후 직업능력개발계좌 발급
 - * 취업성공패키지 2유형 참여자는 훈련비의 50~95%를, 1유형 참여자는 300만원 범위 내 훈련비 100% 또는 90%지원
 - ➔ **훈련비 외에 출석률 80%이상인 경우 훈련장려금(월 11.6만원) 지원**
- **유효기간** : 계좌 발급일로부터 1년

■ 사업추진체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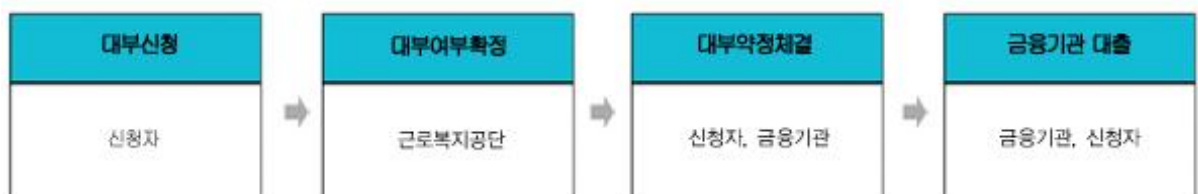
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(☎ 국번없이 1350), HRD-NET 홈페이지(www.hrd.go.kr)

□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

■ 사업내용

- (비정규직근로자, 전직실업자)이 직업훈련시 장기 저리의 생계비 대부 지원
- **지원대상** : 고용부가 지원하는 훈련(지방자치단체 설치 공공직업훈련시설에서 실시하는 취업목적 훈련 포함) 중 **3주 이상 훈련에 참여하고 있는 비정규직노동자 및 전직실업자** (배우자합산 연간 소득금액 8,000만원 이하)
 - * 실업급여 수급중인 자는 제외
- **지원내용** : 월 단위 200만원(1인당 1,000만원 한도) 한도, 연리 1%(신용보증료별도), 최대3년 거치 최대5년 매월 균등 분할 상환

■ 사업추진체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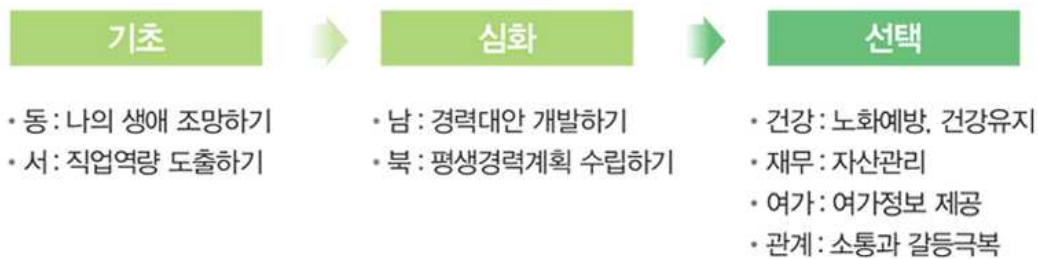


근로복지공단(☎ 1588-0075),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(www.kcomwel.or.kr)

□ 장년나침반 생애설계프로그램사업

■ 사업내용: 근로자가 앞으로의 삶에 대해 보다 긍정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고, 기업 내에서 경력을 유지·개발하여 45세 이후의 삶을 스스로 설계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

- 지원대상 : 40세 이상(1976. 12. 31 . 이전 출생자) 개인 및 사업장
- 교육비 : 무료(식사 및 수료증 제공)
- 학습방법 : 효과적인 생애설계교육방법으로 롤플레이, 팀빌딩, 진단, 교육, 게임 등을 활용
- 운영과정 : 단발성으로 그치지 않는 단계적·체계적 생애설계 교육



대전충남경영자총협회(042253-7051), 노사발전재단 충청센터(042-489-3820)

□ 전직지원서비스

■ 사업내용: 40세 이상 중장년 퇴직(예정)자의 성공취업·성공창업을 돕기 위해 **종합 솔루션**을 제공



노사발전재단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(충청지역센터 042-489-3820)